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항 중 “하려는”를 각각 “신청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갱신하려는”를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등록갱신한”을 “유효기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법 제5조의2 또는 법 제5조제5항”으로 하고 “수입신고”를 “수입신고 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등록 및 변경등록”을 “등록, 변경등록 및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6조제3항”을 “법 제6조제3항 또는 법 제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조제4항”을 “법 제6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의5제1항제1호 중 “법 제5조제4항”을 “법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발급하여야”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6항제3호”를 “법 제7조제7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법 제7조제6항”을 “법 제7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등록”을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한다.

⑥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우수수입업소 등록(연장)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따라 현지실사를”을 “따른 현지실사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지실사 등을”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영업등록증”을 “전자영업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훼손되어”를 “훼손되어 전자영업등록증으로”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업등록증”을 각각 “영업등록증(다만, 전자영업등록증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업등록증”을 각각 “전자영업등록증”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영업등록증”을 “영업등록증(다만, 전자영업등록증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등록증(다만, 전자영업등록증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곡류·서류·두류 등 식물성”을 “식물성·동물성”으로, “식품(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식품”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조제6항제1호”를 “법 제7조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조제6항제2호”를 “법 제7조제7항제2호”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근거 법조문란부터 같은 표 제6호 근거 법조문란까지 중 “법 제7조제6항제3호”를 각각 “법 제7조제7항제3호”로 한다.

별표 1의2 제4호 위반사항란 제4호 중 “법 제5조제4항”을 “법 제5조의2제1항”로 한다.

별표 6 제4호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3조제1항제3호”를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2”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호의2

별표 6 제9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3조제1항제3호”를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호의2”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2]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제27조의2 관련)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

2.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

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5. 식품 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6.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8.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

9.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10.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11.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별표 9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4 제3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원본이어야”를 “원본(다만, 온라인등을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본도 가능)이어야”로 한다.

3)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선적관련 서류

별표 16 제2호 위반행위란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등록갱신”을 “유효기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제2항·제6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제2항·제7항”으로, 같은 서식 중 “등록갱신”을 “유효기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1)·(2)·(6)”를 “(1)·(2)·(7)”로 하고,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의사항 Not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를 등록·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의2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수입자 등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If it is determined that a foreign food facility made its registration or alteration or renewal by fraud or any other improper means, its registration will be revoked according to Article 5-2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nd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alteration or renewal of such foreign food facility made by an importer or any other related parties shall not be accepted for 2 years from the date when the revocation is determined as per 5(1) of the same Act.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를 “우수수입업소 등록(연장)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제6항”으로, 같은 서식 중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을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항”으로, 같은 서식 중 “등록”을 “등록 또는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영업등록증”을 “전자영업등록증”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가목 및 가목 중 “영업등록증”을 각각 “영업등록증(다만, 전자영업등록증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영업등록증”을 “영업등록증(다만, 전자영업등록증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신고인 제1호 중 “영업등록증”을 “영업등록증(다만, 전자영업등록증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4쪽 중 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1쪽)

신고시기	A: 본신고 [] B: 사전신고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신고제품구분	1: 농·임산물 [] 2: 수산물 [] 3: 축산물 [] 4: 가공식품 [] 5: 식품첨가물 [] 6: 기구 또는 용기·포장 [] 7: 건강기능식품 []	처리기간	식품등·건강기능식품: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 (진균수시험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					
		축산물: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정밀검사 18일						

수입신고인 (수입화주)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신고)번호
	주소	
제조 가공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신고)번호
	주소	
수입신고 대행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등록번호
	주소	

제품명	한글명		
유형 또는 품목	영유아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여부	예[], 아니오[]	
	고령친화식품 여부	영양성분 조절 식품 []	경도조절 제품 []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여부	예[], 아니오[]	
	어린이 섭취용 건강기능식품 여부	예[], 아니오[]	
제품상태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식품[], 분말제품[], 액상제품[], 냉동식품(가열하여 섭취)[], 냉동식품(가열하지 않고 섭취)[], 살균제품[], 멸균제품[], 건조제품[], 유당 또는 유처리 제품[], 캡슐제품[], 정제제품[],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해당 없음[]		
총수량	(단위:)	순중량	kg
총항수	항번	화물관리번호	과세가격 (단위: US\$)
세번번호 (HSK 번호)		용도	선하증권(B/L)번호
			품목제조보고번호(자사제조용 및 외화확득용만 해당합니다) 위생증명서 발급번호(해당 축산물·수산물만 해당합니다) 원재료명·재질, 제조·가공방법, 한글표시사항 기재내용 : 제2쪽에 기재

소비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						회사명
[축산물: 해외작업장 (포장처리·가공장)]	주소						
도축장	등록번호						회사명
(축산물만 해당합니다)	주소						
수출업소							회사명
	주소						
포장장소	등록번호						주소
선적일	년	월	일				선적항
입항일	년	월	일				선명(기명) 국내도착항
검사(반입)장소	보관업 등록번호						상호 (☎ - -) 성명 주소
반입일	년	월	일				
검사기관							

표시 등 기타 확인 사항	이력번호(수입신고 및 수입돼지고기만 해당합니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여부	표시함 [], 표시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유기식품등 여부	예[], 아니오[]
	식품조사처리 여부	완제품 조사 [], 원료조사 [], 해당 없음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식품 여부	예[], 아니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분 규격 적용 원료성 제품 [], 최종 제품 [], 해당 없음 []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여부 예[], 아니오[]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생략 대상 여부	예[], 아니오[]
	세트포장 여부	예[], 아니오[]
우수수입업소 등록번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 제3조의5, 제12조 및 별표 1의2 개정규정은 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제3조, 제14조 및 별표 6 개정규정은 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3.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규정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자 준수사항에 위반행위 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영업등록증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별지 제18호 영업등록증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고 전까지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갱신신청서를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갱신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수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변경등록 등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조(수입중단 조치 및 해제조치의 절차) ①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 해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

④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

⑤ -----

----- 유효기간 연장 -----
-----.

⑥ ----- 법 제5조의2 또는 법 제5조제5항 -----
----- 수입신고 수리 -----
-----.

⑦ -----
----- 등록, 변경등록 및 유효기간 연장 -----
-----.

제3조(수입중단 조치 및 해제조치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6조제3항 또는 법 제6조제4항 -----

수출국 정부,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한 영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3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제3조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

① 법 제6조의2제5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생략)

② (생략)

제4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③ ----- 법 제6조제5항-----

-----.

제3조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

① -----

-----.

1. 법 제5조의2제1항-----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
및 제6항-----

----- 발급하거나 재발

③ ~ ⑤ (생략)

<신설>

⑥ 법 제7조제6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⑦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① ~ ③ (생략)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현지실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에게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하여야

급해야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우수수입업소 등록(연장)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7조제7항제3호-----

-----.

1. ~ 3. (현행과 같음)

⑧ 법 제7조제7항-----

-----.

⑨ ----- 제8항-----
-----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 -----
-----.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따른 현지실사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지실사 등을 -

-----.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와 현지실사 일정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14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① ~ ③ (생략)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거나 재등록을 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당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3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제16조(영업의 등록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등록 전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4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3조제3항-----

-----.

⑤ ----- 법 제13조제4항-----

-----.

제16조(영업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전자영업등록증 -----
-----.

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영업자가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영업등록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영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영업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에 영업등록증과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신고를 하려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훼손되어 전자
영업등록증으로 -----

-----.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

----- 영업등록증(다만, 전자영업등록증의 경우는 제외한다)-----

-----.

-----.

② -----

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등록증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변경사항을 반영한 영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등보관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영업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폐업신고)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

----- 영업등록증(다만, 전자영업등록증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③ -----

----- 전자영업등록증-----
-----.

----- 전자영업등록증-----
-----.

제18조(폐업신고) ① -----

----- 영업등록증(다만, 전자영업등록증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②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1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등록증

2. ~ 4.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

1. 영업등록증(다만, 전자영업등록증의 경우는 제외한다)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신설>

제3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 그 대행을 의뢰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하고,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및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적합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은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3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①

1. (현행과 같음)
2. -----

(「식품위생법」 제7조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곡류·서류·두류 등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2의2.·3. (생 략)
 ② ~ ④ (생 략)

 ----- 식물성
 · 동물성 -----
 ----- 식품-----

2의2.·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수입식품정책과	
연 락 처	043-719-2168